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 안내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13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번호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13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4. 21~5. 11
- 공고부처 :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 (02-2110-5164)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입법예고)

2006년 4월 21일
산업자원부 장관

1. 제정이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864호)이 2006. 3. 3 제정·공포되어 2006. 6. 4. 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또한 동 시행령안 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차질없이 구성·운영하여 정부차원의 상생협력 시책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될 예정인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과 이 법에 근거,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의 범위

- (1)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가공·공사·수리·판매·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 (안 제2조)
- (2) “위탁기업”의 범위를 “수탁중소기업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위탁중소기업”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간 거래시에는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관계로 위탁기업의 범위를 축소 (안 제2조제3항)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1) 시행계획의 내용에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목표·내용·예산 등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 (2)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년도 시행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산자부장관에게 제출, 상생협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 (3) 위원회 심의로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산자부장관이 고시토록 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 (안 제4조)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에 간사위원(산자부장관)을 두고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및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5조~제9조)
- (2)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하였음 (안 제10조)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위원회 안건의 사전심의·조정 등으로 구체화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안 제11조~제12조)

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 상생협력 촉진에 있고, 지원대상·절차·조건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함 (안 제13조)

바. 중소기업 지원계획·추진실적을 제출할 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의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할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관 중 중소기업과 기술·인력·정보화 등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기관으로 규정 (안 제14조)

사.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 (1) 대부분의 내용을 종전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승계
- (2)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음 (안 제16조)
- (3) 또한 협의회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7조)
-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기청장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가 정하도록

하였음(안 제18조)

- (5) 수·위탁기업간 거래실태의 조사의 조사항목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서의 교부, 물품수령증 교부, 납품대금 지급사항 등으로 변경되었음(안 제21조)

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 (1) 대부분의 내용을 종전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승계
- (2)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의위원중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구체화(안 제20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내용 안내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06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번호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06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4. 14 ~ 5. 4
- 공고부처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02-2110-5472)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입법예고)

2006년 4월 14일
산업자원부 장관

1. 개정이유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완료 후에는 감리완료보고를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2005.12.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모집공고 절차, 공사감리의 규모 및 대상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학력·경력의 허위신고, 전력기술 증명서의 대여 및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해당 경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2)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3)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구분함
(안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
- 4) 통합감리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할 때에만 적용하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통합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 5)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시·도지사)가 수행할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모집공고 방법 및 절차,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감리 규모 및 대상을 정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의무화 하고 해당 구비서류 제출 생략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설계감리자의 자격기준에 전기분야 기술사 1인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1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 2)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따른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3 신설)
- 3)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필요한 경우, 설계·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용역의 전산관리를 위하여 그 용역의 현황, 자료 등을 단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항)
- 4) 시·도지사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함
(안 별표 1의7 신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추가입법예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번호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22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4. 27 ~ 5. 17
- 공고부처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02-2110-5472)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입법예고)

1. 추가입법예고 사유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우대방안 일환으로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주요골자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 등에 대하여는 고급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1년 이내에 승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순수 경력자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양성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안내

정보통신부 공고 제2006-2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번호 : 정보통신부 공고 제2006-22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4. 19 ~ 5. 9
- 공고부처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통신기획과 (02-750-1329)
- 전문참고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www.mic.go.kr/입법예고)

2006년 4월 19일
정보통신부 장관

1. 개정이유

제258회 임시국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결과로 채택된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별정·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편적 의무 제공사업자 지정 및 보편적 의무 손실보전 조항을 법률에 규정 (안 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 나.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5조제5항)
- 다.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매각 인가신청기한을 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경미한 전기통신설비 매각의 경우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안 제13조제1항 단서, 동조제3항 및 제72조제2호 신설)
- 라. 현행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이전에 임원의 선임행위, 통신망 통합, 합병등기 등 일정행위 금지규정을 법률에 명시 (안 제13조제10항 및 제71조제4호 신설)
- 마.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 부여제도 폐지(제19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제3호 삭제)
- 바. 이용약관 가인가제도 폐지 (제29조제4항 삭제)
- 사.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 감면범위의 기준을 정하여 위임 (안 제32조)
- 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 공동이용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도록 개정 (안 제33조의7제3항)
- 자.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 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영치권 도입 (안 제36조의5제2항)
- 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에 의한 사실조사시 관계인 입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안 제36조의5제2항 및 제3항)
- 카. 금지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정비 (안 제37조제1항제10호 개정 및 동조제4항 신설)
-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시 공·사의 교통수단 사용 및 특수한 설비 이용에 관한 제도 폐지 (제43조, 제46조 및 제73조제5호 삭제)
- 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비용 부담의 주체를 이전을 필요로 하게 하는 사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토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이전비용감면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며, 전기통신설비설치시 보상금액,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1조제3항)
- 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에 대한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54조의2제2항)
- 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행위를 제외함 (안 제70조제4호)
- 너. 부가통신사업 폐지신고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제도 폐지 (안 제78조제1항제2호)
- 더. 별정·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32조의4, 제64조, 제64조의2, 제68조, 제78조)